

#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

〈지난호에 이어〉

## 3. 배출부과금 제도 (법 제41조)

### 3-1. 배출부과금제도의 연혁

- 1981. 12. 31 : 환경보전법 개정시 법적 규제 사항인 개선, 이전명령의 이행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으로서 부과금 징수규정을 신설
- 1983. 9. 1 : 배출부과금제도 시행
  - 수질오염물질(12종) :
 

유기물질(BOD, COD), 부유물질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시안화합물, 유기인화합물, 납 및 그 화합물, 6가크롬 화합물, 비소 및 그 화합물, 수은 및 그 화합물,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, 구리 및 그 화합물, 크롬 및 그 화합물
- 1987. 6. 4 : 배출부과금제도 전면 강화
  - 부과기관의 기산일 변경 :
 

개선명령일부터 부과하던 것을 시료채취일부터 부과
  -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신설
- 1991. 1. 28 : 기본부과금제도 신설 등 개선
  - 기본부과금 도입 : 400만원~50만원(1종 ~5종)
- 1991. 6. 28 : 폐놀오염사태로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 강화
  - 초과율별 부과계수 상향조정 ( $1.0 \Leftrightarrow 4.5, 3.0 \Leftrightarrow 7.0$ )
  -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( $1.05 \Leftrightarrow 1.3$ )
  -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(12종  $\Rightarrow$  15종)
  - 추가오염물질(3종) : 폐놀, 테트라클로로에

틸렌, 트리클로로에틸렌

- 1992. 12. 8 배출부과금 납부지연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시행 '93. 6. 9)
  -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(가산금) 및 제22조(증가산금)을 준용
- 1993. 6. 9 : 시행령 개정
  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신고시 배출부과금 경감혜택 확대
 

$\Rightarrow$  기본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적용을 면제하던 것을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적용까지 면제
  -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(수질)
    - :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.3  $\Rightarrow$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『1종(1.5) ~ 5종(1.1)』
- 1994. 11. 11 :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과금의 납부방법 변경
  - 사업자 공동부담에서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확정 분담부담
- 1995. 1. 1 :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시행
  -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납부처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변경
- 1995. 12. 29 :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도입('97. 1. 1 시행)
  - 배출허용기준이 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부과
 

$\Rightarrow$  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('96. 7. 31)

### • 부과체계 변경

구 분	배출허용기준초과	배출허용기준이하
종 전	기본부과금 + 처리부과금	미 부 과
개 정	사업장별부과금 + 처리부과금	기본부과금

-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 항목 추가  
(15종⇒17종)
- 추가오염물질(2종) : 망간 및 그 화합물, 아연 및 그 화합물
- 1999. 10. 13 : 대기부과금 부과체계 및 부과 계수 조정
  - 초과부과금 중 종별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상향조정
  - 기본부과금에서 농도별 부과계수 면제점을 20%미만에서 30%미만으로 하고, 농도별 부과계수를 조정
  -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 포함

⇒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,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하여 개정
- 2000. 8. 5 :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기본부과금 관련 계수조정
  -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 (1종을 1.5에서 1.6, 1.7, 1.8까지 확대)
  - 기본부과금 : 사업장별부과계수를 신설 (1.1~1.8, 8단계)하고, 폐수재 이용율에 상응하는 감면제 도입 (10~80%까지 확대)
- '03. 1. 1 : 수질부과금 대상항목 확대  
(17종⇒19종, 총질소, 총인)
  - 총질소, 총인은 '03. 1. 1부터 시행. 다만, 가죽⇒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일정기간 완화(1.29공포)
  - '03. 6. 5 : 수질기본부과금 재이용율 감면단계 조정 (8단계 4단계)
    - \* 재이용율이 10~30% : 100분의 20

30~60% : 100분의 50  
60~90% : 100분의 80  
90% 이상 : 100분의 90

### 3-2. 부과금의 성격

-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도록 유도하는 제도
-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, 배출허용기준 초과율, 배출기간 등에 따라 산정 부과

### 3-3. 적용범위

- 초과부과금 :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
- 기본부과금 : 배출허용기준이내일지라도 방류 수 수질기준 초과할 경우
- 대상사업장
  - 개별사업장(무허가, 무신고 포함)
  -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(기본부과금만 해당)

### 3-4. 부과징수기관

- 개별사업장 : 시·도지사
-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: 유역환경청(지방환경청)

### 3-5. 부과대상 오염물질

- 초과부과금(19종) : 유기물질, 부유물질, 카드뮴, 시안, 유기인, 납, 6가크롬, 비소, 수은, PCB, 구리, 크롬, 폐놀류, 트리클로로에틸렌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아연, 망간, 총질소, 총인

\* 총질소, 총인은 2003. 1. 1부터 시행하였으나 가죽·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은 총질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일정기

간 완화(1. 29, 공포)

- 도금시설

구 분	적용기간 및 종질소 배출허용기준(mg/ )	
	2005. 12. 31까지	2006. 1. 1 이후
청 정	300이하	300이하
가	2000이하	600이하
나	2000이하	600이하
특 례	2000이하	600이하

- 가죽 ·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

구 分	적용기간 및 종질소 배출허용기준(mg/ )		
	2005. 12. 31까지	2006. 1. 1부터 2007. 12. 31까지	2008. 1. 1 이후
청 정	300이하	300이하	300이하
가	2000이하	1200이하	600이하
나	2000이하	1200이하	600이하
특 례	2000이하	1200이하	600이하

### 3-6.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

#### 초과부과금

-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,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
- 초과부과금 산정방법

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×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×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× 지역별 부과계수 ×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× 위반횟수별 부과계수

\*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금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500만원)

종 별	1 종	2 종	3 종	4 종	5 종
기본부과금	400만원	300만원	200만원	100만원	50만원

#### 기본부과금

- 적용사업장 : 1종 내지 4종사업장
- 〈산정방법〉
- 부과금액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 방류수 수

질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각종 계수를 곱하여 산정

오염물질 배출량(kg) ×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× 연도별 산정지수 × 사업장별 부과계수 × 지역별 부과계수 × 방류 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

-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: 초과부과금과 동일
- 연도별 산정지수 : 초과부과금과 동일
- 사업장별 부과계수(영 제19조제2항관련)

사 업 장 규 모	1종사업장 (단위 : m <sup>3</sup> /일)					2종 사업장	3종 사업장	4종 사업장
	10,000 이상 10,000 0미만	8,000 이상 10,000 0미만	6,000 이상 8,000 미만	4,000 이상 6,000 미만	2,000 이상 4,000 미만			
부 과 계 수	1.8	1.7	1.6	1.5	1.4	1.3	1.2	1.1

- 지역별 부과계수 : 청정 및 가지역 1.5, 나 및 특례지역 1
-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(1~2.8)

$$\frac{(\text{배출농도} - \text{방류수 수질기준})}{(\text{배출허용기준} - \text{방류수 수질기준})} \times 100$$

\* 분모의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적을 경우와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함.

- 오염물질 산정방법
- 사업자가 제출하는 배출량을 근거로 하여

구 分	시 기	근 거 자 료
예정배출량 (사 전)	매반기 시작 첫째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시의 배출량 및 농도</li> <li>- 최근의 가동결과 : 전반기 확정배출량 관련 자료</li> <li>- 폐수배출량 및 농도 증감예측자료</li> </ul>
확정배출량 (사 후)	매반기 종료 다음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출구별 자가측정자료</li> <li>- 점검기관에서 통보한 오염도 검사결과(검사배출량)</li> <li>-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0이상 적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</li> </ul>

\*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첨부

자료제공 :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부  
다음호에 계속…

환경부 공고 제2006-88호

##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· 고시

「수질환경보전법」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06년 6월 13 일  
환경부장관

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, COD, SS, T-N, T-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(단위 :mg/L)

일련 번호	수종말처리시설명 (소재지)	오염물질항목	별도배출 허용기준	일련 번호	수종말처리시설명 (소재지)	오염물질항목	별도배출허용기준
1	복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(충남 금산군)	BOD	- 원폐수	5	안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(경남 통영시)	BOD	- 조립금속업: 2500이하 - 폐기물처리시설: 800이하 - 기타 업종: 원폐수
		COD	- 원폐수			COD	- 조립금속업: 2200이하 - 폐기물처리시설: 1500이하 - 기타 업종: 원폐수
		SS	- 원폐수			SS	- 조립금속업: 3250이하 - 폐기물처리시설: 500이하 - 기타 업종: 원폐수
		T-N	- 원폐수			T-N	- 원폐수 (조립금속 및 폐기물처리시설 제외)
		T-P	- 원폐수			T-P	- 조립금속: 150이하 - 기타 업종: 원폐수(폐기물처리시설 제외)
2	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(충남 금산군)	BOD	- 원폐수	6	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(경기도 안성시 미 양면)	BOD	- 음료제조업: 3700이하 - 농수산물제조업: 1,100이하 - 기타 업종: 원폐수
		COD	- 원폐수			COD	- 음료제조업: 2000이하 - 농수산물제조업: 4500이하 - 기타 업종: 원폐수
		SS	- 원폐수			SS	- 음료제조업: 2200이하 - 농수산물제조업: 5400이하 - 기타 업종: 원폐수
		T-N	- 원폐수			T-N	- 원폐수
		T-P	- 원폐수			T-P	- 원폐수
		노르말헥산 주출물	- 원폐수				
4	동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(충북 옥천군)	BOD	- 원폐수				
		COD	- 원폐수				
		SS	- 원폐수				

### 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